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 순 규 의원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박 순규 의원입니다.

지난 1월 21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 드리면,

소방기관 및 소방대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국가 또는 시·도가 정당하게 보상하고 소방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소방기본법(2017.12.26)」 및 동 법 시행령(2018.8.7)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의 조례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존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장에게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 중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경우 청구인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전산으로 보관토록 규정하는 한편,

청구인의 손실보상청구 방법, 청구기간, 청구서 및 손실보상 처리절차, 손실보상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소방공무원이 재난현장에서 타인의 물적·인적 손실에 개의치 않고 보다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실시하여 시민피해 최소화에 일조할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 주시길 바라며, 모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